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소방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증가하는 안전교육 수요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갖춘 소방안전교육사 양성을 위해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교육 관련학과 확대 및 교과목의 이수 기준을 명시하고 소방안전교육사 배치대상의 기관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「소방기본법 시행령」(2018. 6. 27.) 개정 시 제15조제2호를 삭제 하여야 하나 누락된 조항을 정비하고, 증가하는 소방안전교육 수요 해소 및 전문성을 갖춘 소방안전교육사 양성을 위해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 관련학과를 확대하고 교과목 이수 기준을 명시하고자 함.

나. 별표 2의3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의 배치대상 명칭 중 ‘한국소방안전협회’를 ‘한국소방안전원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생략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: 입법예고(2022. 8. 25. ~ 10. 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2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

별표 2의2 제5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소방학과·소방안전공학과·소방방재학과·소방행정학과·소방안전관리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관련 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

나. 교육학과·응급구조학과·간호학과·의학과나 그 밖에 유사한 학과에서 전공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

별표 2의3 제4호 중 “한국소방안전협회”를 “한국소방안전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 2의2] 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(응급구조학과, 교육학과 또는 제15조제2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말한다)을 총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가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나.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	[별표 2의2] 5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. <u>소방학과 · 소방안전공학과 · 소방방재학과 · 소방행정학과 · 소방안전관리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관련 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</u> 나. <u>교육학과·응급구조학과 · 간호학과 · 의학과나 그 밖에 유사한 학과에서 전공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</u>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 2의3]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배치대상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배치기준(단위 : 명)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. 소방청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 이상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. 소방본부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 이상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. 소방서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 이상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. <u>한국소방안전협회</u>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본회 : 2 이상 시·도지부 : 1 이상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. 한국소방산업기술원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 이상</td></tr> </tbody> </table>	배치대상	배치기준(단위 : 명)	1. 소방청	2 이상	2. 소방본부	2 이상	3. 소방서	1 이상	4. <u>한국소방안전협회</u>	본회 : 2 이상 시·도지부 : 1 이상	5. 한국소방산업기술원	2 이상	[별표 2의3]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배치대상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배치기준(단위 : 명)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. 소방청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 이상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. 소방본부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 이상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. 소방서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 이상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. <u>한국소방안전원</u>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본회 : 2 이상 시·도지부 : 1 이상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. 한국소방산업기술원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 이상</td></tr> </tbody> </table>	배치대상	배치기준(단위 : 명)	1. 소방청	2 이상	2. 소방본부	2 이상	3. 소방서	1 이상	4. <u>한국소방안전원</u>	본회 : 2 이상 시·도지부 : 1 이상	5. 한국소방산업기술원	2 이상
배치대상	배치기준(단위 : 명)																								
1. 소방청	2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
2. 소방본부	2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
3. 소방서	1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
4. <u>한국소방안전협회</u>	본회 : 2 이상 시·도지부 : 1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
5. 한국소방산업기술원	2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
배치대상	배치기준(단위 : 명)																								
1. 소방청	2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
2. 소방본부	2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
3. 소방서	1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
4. <u>한국소방안전원</u>	본회 : 2 이상 시·도지부 : 1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
5. 한국소방산업기술원	2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소방청 생활안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7667